

일본의 지방세외수입 사례

이 창 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I. 서 론

우리나라 지방재정에 있어 큰 문제점의 하나는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재정력이 미약하다는데 있다. 이는 국세중심의 조세체계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로 인하여 자치단체의 세원 및 재원확충의 여지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 2002년도 우리나라 총예산규모 217조 3,535억원중 중앙정부는 145조 9,602억원으로 67%나 쓰는데 비해 자치단체는 71조 3,933억원으로 33%에 그치고 있어 전체적으로 지방재정은 궁핍하다.

재정자립도 기준으로 보면, 전국 평균 54.6%에 그치고 있다. 이는 자치단체가 주민의 세금으로 세입의 약 50%밖에 충당하

지 못하고 나머지 절반은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는 자치단체를 영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자치단체간 재정력의 격차가 매우 심하여 서울시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94.7%인데 비해 가장 낮은 장흥군의 경우는 9.2%에 불과하다. 또한 지방세수입에 의해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자치단체가 248개 자치단체중 146개 단체로 전체의 59%나 된다. 이 결과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사업이나 행재정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은 재정궁핍 상황속에서 자치단체는 과세자주권이 없어 재원 및 세원 확충을 위하여 스스로 대응할 수 여지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런 가운데 자치단체 스스

로가 재원확충을 위한 방법으로 세외수입의 확충이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세외수입의 확충은 일반적으로 사용료 및 수수료의 효율개선, 경영수익사업의 추진, 효율적 자금관리에 의한 이자수입 확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세외수입은 지방재정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같이 세외수입(nontax revenue)이라는 세입과목으로 구분되어 명확히 정리되지 않고 있다. 세외수입이라 구분되어 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적용되고 있는 의미와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외국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세외수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그러나 세입과목상에 나타나고 있는 사용료 및 수수료, 재산임대 및 매각수입 등이 우리나라의 세외수입에 해당되고 이의 비중이 세외수입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는데, 본고는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세외수입의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세외수입 확충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II. 일본의 세외수입 구조 및 지위

1. 세외수입 구조

우리나라 2002년도 예산기준으로 자치단

체 일반회계 총규모 54조 900억원중 세외수입은 6조 2,172억원으로 11%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세외수입은 정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각각 다양한 종류가 있다. 먼저 정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등이 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금 및 예수금, 융자금원금수입, 부담금, 잡수입, 과년도수입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세외수입의 분류는 IMF나 외국의 경우와는 다르다. IMF의 지방세입 분류기준에 의한 세외수입의 위치를 보면 다음과 같다. IMF에서는 지방재정의 세입을 자체총수입(total revenue)과 보조금(grants)으로 구분하고 있다. 자체총수입은 다시 경상수입과 자본수입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이중 경상수입은 조세수입과 세외수입(nontax revenue)으로 구분된다. 결국 IMF 기준상으로 볼 경우, 우리나라의 세외수입에 해당하는 것은 대략적으로 경상수입의 세외수입과 자본수입을 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경상수입의 세외수입은 ① 사업수입 및 재산수입, ② 사용료 및 수수료, 사업장생산수입, 벌금 ③ 공무원연금, 정부내 사회보장기금에의 기여금, ④ 기타수입 등이 있다. 그리고 자본수입은 재산매각수입과 자본축적을 목적으로 하는 기부금 등 대체로 우리나라의 임시적 세외수입에 해당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우리나라의 세외수입 내용

<표 1> 지방세입 현황

(단위: 억엔, %)

구 분	2001년		2000년	
	결산액	구성비	결산액	구성비
지방세	355,464	35.4	350,261	33.7
지방양여세	6,202	0.6	6,089	0.6
지방특례교부금	9,140	0.9	6,399	0.6
지방교부금	217,764	21.7	208,642	20.1
국고지출액	144,543	14.4	165,990	16.0
지방채	111,161	11.1	130,733	12.6
기타	158,477	15.8	171,951	16.5
세입합계	1,002,751	100.0	1,040,065	100.0

과 IMF기준상의 세외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본의 세입항목상 세외수입은 크게 지방세입에서 지방세, 이전재원, 지방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세외수입이라 볼 수 있다. 대체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외국의 경우의 세외수입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사용료 및 수수료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2. 세외수입의 지위

일본의 지방재정 세입상황을 2001년 결산기준으로 보면, 세입총액 100조 2,751억 엔중 지방세는 35조 5,464억 엔으로 35.4%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교부세는 21조 7,764억 엔으로 21.7%, 기타가 15조 8,477억 엔으로 15.8%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국고지출금은 14조 4,543억 엔으로 14.4%, 지방채가 11조 1,161억 엔으로 11.1%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방세입중 먼저 지방세의 세입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의 지방세입중 지방세는 이원화되어 있으며 다소 복잡하게 되어 있다. 지방세는 도도부현세(道府縣稅)와 시정촌세(市町村稅)로 구분되며, 이들은 각각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된다. 도도부현세와 시정촌세수입을 비교하면 통상 약 4 대 6으로 시정촌세수입이 더 많다. 그리고 보통세는 법정보통세와 법정보통세로 구성되고 있고 법정보통세 수입면에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먼저 도도부현세는 법정보통세 11세목에 13조 8,239억 엔으로 88.9%를 차지하고 있다. 법정보통세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목적세는 3세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1조 7,341억 엔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중 사업세와 도부현민세가 전체수입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시정촌의 지방세 수입 현황을 보면, 법정보통세 6개 세목에서 18조 3,771

억엔으로 91.8%를 차지하고 있다. 법정의 보통세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목적세는 4세목으로 1조 6,459억엔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중 시정촌민세 40.3%, 고정자산세가 46.2%로 전체 수입의 86.5%를 차지하고 있다.

<표 2> 도도부현의 지방세 수입 현황

(단위 : 백만엔)

과목	년 도	2002년 당초예산	
		금액	구성비
합계		15,558,000	100.0
I 법정보통세		13,823,900	88.9
1. 도부현민세		4,291,600	27.6
2. 사업세		4,251,100	27.3
3. 지방소비세		2,564,600	16.5
4. 부동산취득세		557,400	3.6
5. 도부현담배세		281,200	1.8
6. 골프장이용세		80,100	0.5
7. 특별지방소비세		-	-
8. 자동차세		1,788,900	11.5
9. 광구세		400	0.0
10. 수렵자등록세		1,700	0.0
11. 고정자산세		6,900	0.0
II 법정외보통세		-	-
III 목적세		1,734,100	11.1
1. 자동차취득세		485,700	3.1
2. 경유인수세		1,247,200	8.0
3. 입렵세		1,200	0.0
IV 旧法수입		-	-

그런데, 일본의 세외수입은 <표1>에 나타나 있는 세입항목의 기타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이 기타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이 대체로 우리나라의 세외수입에 해당된다. 세외수입은 2000년 세입총액 대비 16.5%

<표 3> 시정촌의 지방세 수입 현황

(단위 : 백만엔)

과목	년 도	2002년 당초예산	
		금액	구성비
합계		20,023,000	100.0
I 법정보통세		18,377,100	91.8
1. 시정촌민세		8,076,800	40.3
2. 고정자산세		9,259,700	46.2
3. 경자동차세		132,000	0.7
4. 시정촌담배세		864,400	4.3
5. 광산세		1,500	0.0
6. 특별토지보유세		42,700	0.2
II 법정외보통세		-	-
III 목적세		1,645,900	8.2
1. 입탕세		24,900	0.1
2. 도시계획세		1,304,800	6.5
3. 수이지역세등		200	-
4. 사업소세		316,000	1.6
IV 旧法수입		-	-

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나 대체로 16% 내외의 비중을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의 약 11% 수준 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세외수입에 해당하는 항목을 기초로 하여 일본 지방세외수입의 현황을 무사시노시(武蔵野市)의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 세입총액 542억엔중 시세 344억엔, 지방양여세 2억엔, 지방교부세 4,800만엔, 국고지출금 33억엔, 도지출금 32억엔 그리고 각종 교부금 등의 이전재원을 제외한 금액이 세외수입이다.

즉, 세외수입은 분담금 및 부담금 3억 5,400만엔, 사용료 및 수수료 14억 2,500만엔, 전입금 32억 4,600만엔, 전출금 7억엔,

<표 4> 세외수입의 현황

(단위 : 천엔)

款	2002년 예산액	2001년 예산액	구성비율	
			2002년	2001년
1. 市稅	34,364,401	34,560,000	63.4	64.9
2. 지방양여세	227,000	226,000	0.4	0.4
3. 이자할교부금	629,000	900,000	1.2	1.7
4. 지방소비세교부금	1,618,000	1,586,000	3.0	3.0
5. 특별지방소비세교부금	700	2,000	0.0	0.0
6. 자동차취득세교부금	262,000	271,000	0.5	0.5
7. 지방특례교부금	2,167,000	1,397,000	4.0	2.6
8. 지방교부세	48,000	18,000	0.1	0.0
9. 교통안전대책특별교부금	20,000	20,000	0.0	0.0
10. 분담금 및 부담금	354,670	361,420	0.6	0.7
11. 사용료 및 수수료	1,425,009	1,436,655	2.6	2.7
12. 국고지출금	3,345,000	3,209,481	6.2	6.0
13. 都支出金	3,273,832	3,236,916	6.0	6.1
14. 재산수입	92,815	120,048	0.2	0.2
15. 기부금	100	100	0.0	0.0
16. 繰入金	3,246,226	2,737,599	6.0	5.1
17. 繰越金	700,000	700,000	1.3	1.3
18. 諸收入	1,282,747	1,460,481	2.4	2.8
19. 市債	1,143,500	1,057,300	2.1	2.0
계	54,200,000	53,300,000	100.0	100.0

잡수입 12억 8,200만엔 등 총 71억 245만 엔으로 총세입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중 전입금이 가장 많고 사용료 및 수수료, 잡수입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01년도 결산기준 세입총액 대비 세외수입 비중 약 12%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Ⅲ. 일본의 세외수입 사례

1. 사용료 및 수수료 확대

세외수입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은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이다.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고 수수료는 특정인을 위한 해당 자치단체의 사무에

<표 5> 사용료 및 수수료의 내역

(단위 : 천만엔)

구분 \ 연도	1996	1997	1998	1999	2000
1. 사용료	1,823,955	1,863,293	1,890,867	1,852,861	1,877,977
고등학교수업료	308,566	303,684	297,147	293,224	293,277
기타 수업료	70,066	74,613	77,594	81,369	85,718
보육소사용료	205,170	204,302	213,215	223,285	224,045
공영주택사용료	588,083	604,284	609,703	549,599	561,431
발전수리사용료	26,380	26,546	27,037	26,634	26,623
기타	625,690	649,864	666,171	678,750	686,883
2. 수수료	524,003	548,017	523,391	527,614	571,569
법령에 의한 것	237,066	238,534	202,520	195,613	234,279
조례에 의한 것	286,937	309,483	320,871	332,001	337,289
계(1+2)	2,347,958	2,411,310	2,414,259	2,380,475	2,449,546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것이다.

2001년도 결산기준으로 사용료 및 수수료의 결산액은 2조 4,495억엔으로 세입총액에 접하는 비율은 2.4% 정도이다. 이중 사용료의 결산액은 1조 8,779억엔이다. 그 내역을 보면, 공영주택사용료가 5,614억엔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하 고등학교수업료 2,937억엔, 보육소사용료가 2,240억엔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수수료의 결산액은 5,715억엔으로 그 내역을 보면, 호적수수료, 자동차운전면허수수료등 법률 또는 이에 근거하여 법령에 의해 징수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수수료령에 기초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의해 징수한 것이 2,343억엔 그리고 인감등록증명서의 교부수수료, 입학시험수수료 등 지방자치법제227조 제1항의 규정에 근

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징수한 것이 3,373억엔이다. 한편, 사용료 및 수수료는 최근 5년간 큰 변화없이 세입총액의 2.5%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2. 공유재산의 활용

일본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는 세외수입의 증대를 통한 재원을 확보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일본에 있어서도 향후 보다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자치단체의 재산을 보통재산으로 불리워지고 있다. 일본 지방자치법에 보통재산이란 지방공공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표 6> 토지신탁일람

(2000년 8월 현재)

명칭	신탁목적	시설개요	계약일 (건물완성일)	수탁자	비고
新宿 모노리스(7,166㎡)	임대용사무소빌딩을 건설하여 관리하고 활용함	면적 90,451㎡ 지상 30층	1987년 (1990년)	安田신탁은행(대표수탁자)외2	
兩國 시티코아(5,525㎡)	지역활성화를 목적으로 주택병설의 임대용업무시설빌딩을 건설하여 관리하고 활용함	면적 40,631㎡ 지상 18층	1989년 (1992년)	住友신탁은행(대표수탁자)외2	도민주택 60호
東京都 건강플라자(10,185㎡)	민관이 공동으로 연대하여 도민의 건강을 종합적으로 증진하는 거점으로서 동경도건강플라자를 건설하여 관리하고 활용함	면적 83,495㎡ 지상 18층	1989년 (1993년)	三菱신탁은행(대표수탁기관)외1	공공부문은 독립병원, 건강증진센터 등
코스모스青山(10,645㎡)	國連대학교등연구소, 동경위맨즈플라자 및 임대용업무시설빌딩을 건설하여 관리하고 활용함	면적 41,027㎡ 지상 4층	1989년 (1995년)	三井신탁은행(대표수탁기관)외1	공공부문은 연구소등
勝도키 산스퀘어(1,944㎡)	제1종시가지재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수탁자에게 귀속한 시설건축물을 관리하고 활용함	면적 20,425㎡ 지상 16층	1991년 (1996년)	三井신탁은행(대표수탁기관)외1	도민주택 54호

재산중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는 ① 부동산, ② 선박, 항공기 또는 부속 부동산 및 동산, ③ 지상권, 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④ 주식, 사채권, 국채증권 기타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⑤ 출자에 의한 권리, ⑥ 부동산 신탁에 의한 수익권 등이다.

일본 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기본원칙은 지방재정법 제8조와 지방자치법 제96조에 열거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국가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 공히 국공유지를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여 대형건물을

신축하기도 하고 대도시 자투리 땅에 소형 주차시설을 만든다든가 특유의 아름다운 건물을 짓고 있는 등 큰 땅과 작은 땅 그리고 좋은 입지와 좋지 않은 입지를 모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특히 자치단체에서 신탁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경도의 보통재산의 활용사례는 좋은 사례로 인식되고 있다. 동경도는 도재정의 구조전환을 통해서 자주적인 재정재건을 위하여 1999년 7월 재정재건플랜을 수립했

<표 7> 공영경기 수익금의 추이

(단위 : 백만엔)

연 도	경 마	경 료	競 艇	오토-레이스	합 계
1996	6,738	59,044	98,927	10,510	175,220
1997	4,862	54,652	93,657	10,077	163,248
1998	6,048	46,589	82,814	7,047	142,498
1999	4,993	35,674	65,861	3,220	109,948
2000	3,741	29,891	39,953	2,740	76,325

다. 재정재건플랜은 직원의 급여삭감을 비롯하여 각종 시책의 재검토, 세입확보대책과 재원확보대책 등을 강구하여 2003년도까지 재원부족을 해소한다는 방침에 있다. 그 일환으로 최근 동경도는 도의 공유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동경도 재무국에서 모든 재산에 대해 철저하게 검토하여 자산어세스먼트를 실시함과 동시에 유효활용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동경도 공유재산의 유효한 활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을 담당하는 직원의 전문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공유재산의 집행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동경도가 직접 행할 필요가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아웃소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2000년 4월에 추진된 동경도의 조직개편에 있어서 공유재산의 취득에서 처분까지 일괄하여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공유재산의 자산유효활용의 관점에서 재산관리와 운용을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무국의 관재부와 용지부

가 통합되어 재산운용부를 설치하는 등 공유재산전담체제가 새롭게 확대구축되고 있다.

특히, 토지의 소유권을 유보하면서 민간 활력에 의한 토지의 효율적 운용을 기하는 토지신탁제도에 의한 토지의 유효활용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新宿모노리스]를 비롯하여 5건의 토지신탁을 행하고 있다(<표 6>참조). 이에 따라 신탁배당금의 누적실적은 1991년부터 1999년까지 약 377억엔에 이르고 있다.

3. 수익사업 추진

일본 자치단체의 수익사업은 공영경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경마, 경륜, 경정, 복권수입 등이다. 우선 공영경기 수익금을 보면, 2000년 결산기준으로 763억엔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중 경정수익금이 400억원으로 가장 높고 경륜이 299억엔 그리고 경마가 37억엔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의 수익금 추이를 보면, 1996년 공영경기 수익금이 1,752억엔이던 것이 1997년 1,632억엔으로 감소하고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8> 2001년 공영경기 단체별 수익금액

(단위 : 백만엔)

구 분	경 마	경 룬	오토·레이스	競 艇	합 계
도도부현분	100	2,426	1,140	2,200	5,866
지정도시분	-	596	-	5,454	6,050
시정촌분	-	24,097	1,600	24,434	50,131
일부사무조합분	3,641	2,773	-	7,866	14,279
합 계	3,741	29,891	2,740	39,953	76,325

한편 공영경기를 통한 단체별 수익금 현황을 보면, 2001년 공영경기 총수익금 763억엔중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에서 501억엔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고 다음이 일부 사무조합 형태의 복수의 자치단체 연합에서 143억엔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리고 지정도시에서 60억엔, 도도부현에서는 59억엔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공영경기는 모든 자치단체에

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지정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도도부현의 경우는 지정의 절차없이 경마, 경륜, 경정을 통한 공영경기를 할 수 있다. 다만 시정촌 및 특별구의 경우는 경마 및 경륜의 경우는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총무대신이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오토레이스 및 경정의 경우는 일정한 요건하에 총무대신이 지정하는데 있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고 있다.

<표 9> 공영경기 시행에 대한 지정기준

경마	경륜	오토 레이스	競艇
1. 도도부현(지정불필요) 2. 심각한 재해를 입은 시정촌(특별구를 포함, 총무대신 지정) 3. 지방경마장소재 시정촌(총무대신 지정) 4. 특별구가 존재하는 구역내에 지방경마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경마장이 존재하는 특별구를 제외한 기타의 특별구(총무대신 지정)	1. 도도부현(지정불필요) 2. 인구, 재정 등을 감안하여 총무대신이 지정하는 시정촌	1. 도도부현 2. 京都市, 大阪市, 横浜市, 神戸市, 名古屋市 3. 都의 모든 특별구가 조직하는 조합 4. 오토·레이스장소재 시정촌(지정은 불필요하나 의회의 의결은 필요함)	1. 도도부현(지정불필요) 2. 인구, 재정 등을 고려하여 총무대신이 지정하는 시정촌(의회의결이 필요함)

<표 10> 공영경기 시행단체수(2002년 4월 현재)

구 분	도도부현			시정촌			계		
	시행형태		계	시행형태		계	시행형태		계
	단독	조합		단독	조합		단독	조합	
경마	3	13	16	6	47	53	9	60	69
경륜	7	2	9	52	68	120	59	70	129
競艇	1	0	1	23	152	175	24	152	176
오토·레이스	2	0	2	6	0	6	8	0	8
단체수	13	15	28	88	322	354	101	337	382

주 : 동경도의 23특별구는 시정촌으로 간주한다.

한편, 공영경기를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수는 전체적으로 382개 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중 단독의 형태가 101건인 반면 조합의 형태가 337건으로 대체로 복수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영경기는 도도부현에서 28개 단체에서 시행되고 있고 시정촌에서 354개 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으로 비교적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발행액에 대해 거의 전부가 소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수익액 또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기타 잡수입

세외수입에 포함되어 있는 잡수입은 다양하다. 먼저 조입금은 지방공기업회계 및 기금등에서 오는 수입금이다. 조입금의 결산액은 3조 2,336억엔으로 세입총액에 점하는 비율은 3.1%이다. 조입금의 내역을 보면, 조입금총액의 93.9%를 차지하고 있는 적립금활용 등에 의한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은 3조 370억엔이다. 또한 지방공기업회계로부터의 조입금은 1,899억엔이다.

그리고 기타 수입의 결산액은 11조 8,079억엔으로 세입총액에 점하는 비율은 11.5%이다. 내역을 보면, 융자금수입등의 제수입이 7조 9,288억엔, 조월금이 2조 996억엔, 재산수입이 7,949억엔, 분담금 및 부

<표 11> 복권수입 현황

(단위 : 백만엔)

년 도	발행액	소화액	수익액
1996	837,850	828,493	356,566
1997	808,313	784,782	335,425
1998	850,060	779,688	336,061
1999	836,420	807,698	344,305
2000	929,089	929,089	391,074

다음으로 복권수입을 들 수 있다. 2000년도 결산기준으로 복권수익액은 3,910억엔

담금이 8,282억엔, 기부금이 1,564억엔이다.

IV. 맺는 말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일본의 세외수입이 지방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의 세외수입 비중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세외수입의 확충을 위해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의 확대를 기하고 있고 또한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기하고 있으며 아울러 경매, 경륜 등 공영경기와 복권 사업을 통한 수익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의 경우는 지방세수의 확충에 있어서 다소의 재량권이 있는 가운데 세외수입의 확충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보여지고 있다. 즉, 법정외보통세의 부과징수가 가능하고 초과세율에 대한 지방교부세의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에 제외하여 세수확충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상황하에서도 다양한 세외수입의 확충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재원확충 여지가 적어 세외수입 확충에 보다 큰 의의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자치단체에서는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

시사용어 해설

• 워커홀릭(Work-a-holic)

work(일)와 al-coholic(알코올중독자)의 합성어. 일중독자, 업무중독자 등으로 번역된다. 업무제일주의자는 일종의 병이라는 풍자가 담긴 말로서 미국의 경제학자 W. 오츠가 그의 저서 <워커홀릭>에서 처음 사용했다.